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검사 (신설) ③ (생략) (별표) 수수료액표	5. (현행과 같음) 6.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사본 ③ (현행과 같음) (별표) 수수료액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종목</th> <th>단위</th> <th>금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5">1~5 (생략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종목	단위	금액	비고	1~5 (생략)					(신설)	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종목</th> <th>단위</th> <th>금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5">1~5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6. 환자에 관한 의료 기록사본 교부</td> <td>방사선 필름사본 교부</td> <td>1매 (14×14 인치)</td> <td>3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종목	단위	금액	비고	1~5(현행과 같음)					6. 환자에 관한 의료 기록사본 교부	방사선 필름사본 교부	1매 (14×14 인치)	3,000원	
구분	종목	단위	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
1~5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신설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종목	단위	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
1~5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환자에 관한 의료 기록사본 교부	방사선 필름사본 교부	1매 (14×14 인치)	3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'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 심사보고서

1994. 9. 13.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8. 31.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4. 9. 6.
- 다. 상정일자 : 제24회임사회 제2차위원회(94. 9. 12.)상정, 질의토론
제3차위원회(94. 9. 13.)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최영명)

- 가. 제출이유
 •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'94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 2) 매각-5필지

소재지	지목	지적(㎡)	매각시기	매각
아현동 570-68	대	18	하반기	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
합정동 457-4	대	5	"	"
" 457-6	대	6	"	"
" 457-19	대	22	"	"
공덕동 253-19	대	198.3	"	" 제95조 제2항 제20호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건재)

- 매각재산중 공덕동 253-19 1필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임.
- 아현동 570-68동 4필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점유자와 인근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,
- 당해지역 주민의 편의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매각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문(유남렬 위원) : 매각분중 공덕동 253-19호에 대한 건은 지난번 임시회 때 보류분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했는지 그 경위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란다.
- 답변(최영명 재무과장) : 위 재산에 대하여 재산활용방안, 지분권행사, 교환 등을 각과에 서면문의했으나 8월 31일까지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.
그 지역에서는 복지시설 건축이 부적합하고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부적합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- 질문(김문태 위원) : 매각분중 공덕동 253-19호는 경영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떤가?
- 답변(최영명 재무과장) : 위 재산은 도심재개발지역에 소재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도시재개발사업 목적의 사용이 어렵습니다.
- 질문(김문태 위원) : 위 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나?
- 답변(최영명 재무과장) : 동까지는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.
- 질문(유남렬 위원) : 본 건중 공덕동 253-19호 매각건은 가결시켜 주되 새로 짓는 공덕2동 신축에 드는 대지구입 및 건축비를 상회할 수 있게 매각할 수 있겠는가?
- 답변(최영명 재무과장) : 예. 위 건의 매각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새로 짓는 공덕2동 청사 신축에 드는 대지구입 및 건축비를 상회할 수 있게 매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

본 건의 매각재산중 공덕동 253-19호 매각분은 구 공덕2동사무소 청사부지로서 재개발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덕2동사무소 신축시 대지구입비 및 건축비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재무과장의 의견 청취후에 원안가결하였음.

'94.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

의안 번호	33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년 8월 31일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제안사유 :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'94.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주요골자 :

1) 매각-5필지

소	재	지	지목	지적(㎡)	매각시기	매			각
아현동	570-68	대	대	11	하반기	지방재정법시행령	제95조	제2항	제7호
합정동	457-4	대	대	5	"	"			
"	457-6	대	대	6	"	"			
"	457-19	대	대	22	"	"			
공덕동	253-19	대	대	198.3	"	"	제95조	제2항	제20호

'94.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

'9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 고	
			건수	수 량	예 산	건수	수 량	예 산	건수	수 량	예 산		
취 득	계	토지	2	515.20	958,320	2	728.80	1,418,125	4	1,244	2,376,445		
		건물	2	301.63		2	233.42		4	535.05			
	매	당초	토지	2	515.20	958,320	2	728.80	1,418,125	4	1,244		2,376,445
			건물	2	301.63		2	233.42		4	535.05		
	입	변경	토지										
			건물										
처 분	계	토지	24	1265.20	1,054,865	8	284.1	843,750	32	1,549.3	1,898,615		
		건물	0	0	0	0	0	0	0	0	0		
	매	당초	토지	24	1265.20	1,054,865	3	41.8	42,910	27	1,307		1,097,775
			건물	0	0	0	0	0	0	0	0		0
	각	변경	토지				5	242.3	800,840	5	242.3		800,840
			건물				0	0	0	0	0		0
사용및	계	건물	1	192.07	25,929				1	192.07	25,929		
대부허가	당초	건물	1	192.07	25,929				1	192.07	25,929		

'94년도 매각대상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번호	재 산 의 표 시			매 각 상 수 량	과표또는 평 가 액	매각시기	매 각	매수희망자 주소, 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일단의수량						
1	대	아현동 570-68	11	11	11,000	하반기	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	아현동 570-13 이정자	
2	대	합정동 457-6	6	6	6,600	하반기	"	합정동 457-7 윤태정	
3	대	합정동 457-4	5	5	5,500	하반기	"	합정동 457-3 김영수의1인	
4	대	합정동 457-19	22	22	24,200	하반기	"	"	
5	대	공덕동 253-19	198.3	198.3	753,540	하반기	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	중구 충무로3가 60-1 주)극동건설	

관리계획변경(매각)재산내용

1. 재산의 표시

소 재 지	지목	지적(㎡)	매수희망자 주소 및 성명	비 고
아현동 570-68	대	11	아현동 570-13 이정자	

2. 재산의 현황

- 위 치 : 아현중학교 뒷편에 위치한 일반 주거지역임
- 이용상태 : 매수 희망자가 주거용(건물)으로 사용중임

3. 매각사유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 규정에 의거 매각

관리계획변경(매각)재산내용

1. 재산의 표시

연번	소 재 지	지목	지적(㎡)	매수희망자 주소 및 성명	비 고
1	합정동 457-6	대	6	합정동 457-7 윤태정	
2	" 457-4	대	5	합정동 457-3 김영수의 1인	
3	" 457-19	대	22	"	

2. 재산의 현황

- 위 치 : 합정동사무소와 망원정 사이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임
- 이용상태 : 도로개설공사 후 남은 잔여토지로서 현 나대지임

3. 매각사유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 규정에 의거 매각

관리계획변경(매각)재산내용

1. 재산의 표시

소 재 지	지목	지적(㎡)	매수희망자 주소 및 성명	비 고
공덕동 253-19	대	198.3	중구 충무로 3가 60-1 주) 극동건설	

2. 재산의 현황

- 위 치 : 공덕국민학교 뒷편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임
- 이용상태 : 마포구 제2구역 8-2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구역내에 있으며 현 나대지임

3. 매각사유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 규정에 의거 매각